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이 나 영*

본 논문은 성매매에 관한 확일적 담론 구조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다른 개념화의 가능성 탐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와 연관된 서구 여성운동의 논쟁은 주로 '규제주의(regulationist)'와 '근절주의(abolitionis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80년대 이후 '강제(forced)' 대 '자발(voluntary)'이라는 대립적 개념이 '성노동(sex work)'이라는 개념과 맞물리면서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한 논의구도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성적 정체성과 행위성, 가부장제와 성차별, 자본주의와 노동, 계급관계, 인종차별, 지구화와 국가간 불평등의 문제 등, 다양하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성매매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성매매가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자 인권문제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왔다. 그들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총체적인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드러내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재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은 지난 2004년 3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의 '성공'적인 국회통과를 추동하였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담론의 특징은 '근절'을 정점으로 한 단일한 시각으로 수렴되고 있다. 여기에는 가부장의 '위선적인 근절'논리와 '공창'의 논리에 맞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명분이 깔려있지만, 문제는 이분법적 선택의 강요로 인해 내부적인 경계가 그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천의 역사와 여성들의 목소리가 확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반화와 보편화의 문제,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지배담론의 재생산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내 주류 담론과 시각을 고찰하고, 노동(work)과 성(sex)의 복합구조 속에서 성매매를 다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결국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에 대한 가부장의 전통과 인식에 저항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던 여성주의 성정치학의 바로 그 지점에서 성매매를 재인식하고, 문화 전반에 겹겹이 얽혀 있는 성애화, 성별화된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를 사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제어: 성매매, 성노동, 여성주의 성정치학, 규제주의, 근절주의, 비범죄주의

* Ph.D. Candidate in Women's Studies, University of Maryland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경, 조주현, 변혜정, 안미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서론 및 문제제기

성매매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와 운동¹⁾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에 의해 여성의 몸과 성이 통제되는 방식에 제동을 걸어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가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성매매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접근해 왔다. 그러한 노력과 여성부의 강력한 지원이²⁾ 결합되어, 마침내 지난 2004년 3월 2일,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3일 발효되었다.³⁾

법은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구성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구성의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한다 (Sullivan, 2003: 68). 그러한 측면에서 이 법안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우선,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 (1961년 제정)에서

-
- 1) 본 논문은 어법상의 문제로 ‘성매매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주의 운동’ 혹은 ‘성매매 관련 여성주의 운동’ 등으로 표기함을 밝힌다.
 - 2) 여성부는 성매매법안 제정을 위한 여성부의 지원과 노력을 소개하면서 “여성부가 성매매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을 기획”하고 “윤락여성을 선도의 대상으로 보던 것에서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조정아, 2003: 13).
 - 3) 이 법안은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처벌법’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제3자인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산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선불금과 폭행,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단순성매매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성매매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에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집행을 정지하게 하였다. ‘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전용시설을 설치하고 의료비 등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초, 중등학교에서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의의에 관해서는 김엘립(2004)과 양현이(2004)를 참조할 것.

40여 년간 사용되었던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가 법률적인 공식 용어로 채택되었고, 둘째, ‘윤락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으며, 셋째,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앞의 두 가지 측면은 그동안 여성주의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성매매의 총괄적인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드러내고 성매매여성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언어와 시각에 균열을 가하면서 그들을 피해자로 재구성하고자 한 여성운동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세 번째 측면은 그동안 비가시화 되어왔던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중간알선자를 범죄행위의 주체로 부각시켜 성매매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폭력과 착취의 주요한 고리를 단절하고자 한 의지가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현아(2004)는 새 법안이 그 초점을 “윤락행위”에서 “성매매알선 및 인신매매로” 옮겨감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성판매자와 구매자간의 2자관계가 아니라 중간매개자를 중요한 행위주체로 부각시켜 “3자관계 구도”로 포착한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제재의 초점이 “윤락여성처벌에서 중간매개자 처벌”로, 법의 방향은 “피해자 처벌”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점에 이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39-40).

그러나 성매매법안의 시행 이후, 여성주의자들은 뜻밖의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남성들의 저항은 차치하고라도 생존권을 주장하는 성매매여성들의 국회 앞 ‘단식투쟁’은 여성주의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상황은 여성주의자들과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확대된 듯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행태⁴⁾와 더불어 법안시행 ‘이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여성계’의

4) 2004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의 국회 앞 집단 농성은 법안의 성공적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성부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한 일간지는 보도하고 있다(중앙일보, 2004년 12월 11일). 사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이후, 2004년 10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류 언론들은 연일 특집을 편성하고 성매매불가피론 등을 강변하면서 성매매방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책임도 있을 것이다.)⁵⁾ 이렇게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국가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단일한 목소리로 ‘단결’할 것을 요구받는다. 여기에는 ‘성매매 근절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혹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가? 아닌가?’ 라는 단일한 질문에 대한 찬반의 입장표명이 전제되어 있다. 더군다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나 ‘주저하는’ 답변 뒤에는 ‘공창제’를 지지한다는 사고가 숨어있으리라는 질문자의 단언적 ‘예상’이 깔려있다. 문제는 원미혜(2004)가 지적했듯이 그러한 도식적이고 이분법적인 입장 표명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경계를 긋는 선명성의 경쟁”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틈새에서 그 사이사이에 놓인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가시화하려던 그동안의 여성주의의 작업들은

왔다. 이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담론을 대변하고 있는데, 즉 자연적인 남성의 성욕구를 당연시 하는 ‘성본능론’ (강간예방론과 연관), ‘필요악’이므로 공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 인류의 가장 오랜 된 직업으로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성산업의 축소로 인한 국가경제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경제우선논리’ 등을 근거로 ‘성매매옹호론’, ‘성매매불가피론’ 등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저항담론이 지난 ‘윤방법’ 개정과 시행(1996년)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주의자들을 공격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윤락 ‘쌍벌규정’ 여파 업소들 찬바람: 개정윤락행위방지법 석달째” (한겨레, 1996년 3월 11일), “찬바람부는 윤락가” (중앙일보, 1996년 1월 7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줄어 가겠세도 벽찬 윤락가 업소들의 어려움을 소개하면서 국가경제를 우려했으며 이는 다시 “윤락 단속하기 앞서 종사여성 살길 터야”(한겨레 독자란, 1996년 3월 17일) 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 5) 사실 여성주의자들은 법안 통과 이전인 2003년에 이미 그러한 사회적 저항과 공방을 예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다시함께센터> 소장, 조진경은 한 토론회에서 “여성부는 쇠퇴하는 집결지에 중심을 맞추는 사업보다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과 “성산업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성매매 근절 운동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데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지적한바 있다(조진경, 2003: 31). 한편 한 활동가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다”고 시인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통과되어” 사회적 여론 형성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활관련 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적했다(2004년 10월).

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49).⁶⁾

성매매를 반대한다는 것과 근절주의가 동일한 것이 아니듯이 근절주의를 비판적으로 본다고 해서 성매매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근절주의가 내재한 논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성매매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본 논문은 여성주의 안에서 ‘성 노동’을 이야기하거나 근절주의가 가진 한계를 논하면 바로 ‘공창제’로 환치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봉쇄당하는 단선적 논리구조와 획일적 담론의 지배적 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을 통해 이론적 논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논쟁을 통한 이론화 작업은 ‘우리’ 안의 허술한 논리구조를 성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남성) 근절주의자’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공창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⁷⁾ 본고는 먼저 서구 여성주의 운동과 논쟁의 역사를 소개하고, 한국의 성매매 관련 담론과 관점의 지형을 짚어보면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6) 원미혜(2004)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위한 여성주의의 다양한 활동들이 성매매 근절 운동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첫째,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장시킨다”는 점, 둘째, “성매매 근절 운동이 여성의 현실과 조우할 수 없다”는 점, 셋째, 그동안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성정치학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페미니스트들을 이분법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48-49).

7) 본 논문은 논지의 선명성을 위해 남성들의 성매매인식과 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제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담론은 크게 ‘규제주의’와 ‘위선적 근절주의’로 나눌 수 있다. 두 입장은 (남성의)성적욕구를 자연화하면서도 위험한 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순을 보이면서 본질론적인 성관념으로 수렴된다. 전자의 입장은 ‘여성학 하는 여자들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성매매법안’이라 비판하고 성매매여성들의 노동의 권리를 지원하는 듯 하면서 이전의 공창제 논의와 차별화하려 하지만, 사실은 ‘성본능론’과 ‘필요악’ 논리의 변주일 뿐이다. 후자는 겉으로는 성매매가 나쁜 것이라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성매매에 반대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남성문화에 동조하여 그동안의 성산업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2004년 1월, 7월에서 8월, 10월에서 12월 초반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에 머물면서, 주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성매매 담론지형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해 왔다. 따라서 본고는 기본적인 자료수집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문헌연구, 분석 방법론으로는 텍스트분석(textual analysis)에 기반함을 밝혀둔다. 또한 한 사람의 여성주의자로서 성매매에 관한 ‘입장(positioning)’에 대한 논문이므로, 다른 ‘입장들’에 열려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II. 성매매에 관한 서구 페미니스트 운동과 논쟁⁸⁾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성적 정체성과 행위성, 가부장제와 성차별, 자본주의와 계급, 인종차별의 문제 등이 긴밀하게 얽혀있는 성매매 영역은 오랫동안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핵심적 논쟁 지형이 되어 왔다(Pickup, 1998; Kempadoo, 1998; Doezema, 1998; 2000; 2002; O’connell, 2002; Miller, 2004). 1980년대 이후 ‘강제(forced)’ 대 ‘자발(voluntary)’이라는 대립적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의 서구의 논쟁은 주로 ‘규제주의(regulationist)’와 ‘근절주의(abolitionis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대립양상은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운동진영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규제주의는 국가의 허가 하에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정기적 의료검진과 거주제한 등의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규제주의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는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것과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연화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의 성매매에 관한 시대적 관습과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 성매매는 ‘죄’나 ‘질병’

8) 본 논문은 용어의 ‘맥락화’와 분명한 ‘위치성’을 위해 서구 여성주의자들을 페미니스트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이론가들을 여성주의자로 지칭하면서 페미니즘과 여성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혹은 ‘범죄’ 등으로 여겨졌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일탈자’ 혹은 ‘질병을 유포하는’ ‘위험한 자’ 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Doezema, 2000; Lerum, 1999).

그러한 19세기 구미의 시대적 관습에 반하여 일단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을 “문제적인 여성(trouble maker)”이라는 개념에서 “문제에 처해있는 여성(women in trouble),” “비난”의 대상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재개념화하고(Lerum, 1999: 10-11),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1864년, 1866년과 1869년에 공포된 ‘전염병에 관한 법률(Contagious Diseases Acts)’에 대한 대응이 발단이 되어 만들어진 Ladies National Association (LNA)이라는 단체는 이 법안이 의료적 관리를 통해 성매매를 통제하고자 하는 규제주의적 접근방식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면서 성매매 관련 이슈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Walkowitz, 1980; Doezema, 2000). 그들은 성매매종사 여성들을 성일탈자나 남성을 유혹하는 타락한 여성이라고 보는 관점에 반대하면서 남성의 성적 욕망과 성의 이중구조를 비판하였다. 그러한 성적 이중구조가 성매매의 존재근거가 되며 양성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확대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매매종사자들을 ‘성적 유혹자’나 ‘죄를 범한 과렴치한’에서 남성 성적 욕망의 가없는 피해자로 위치시킨 점(Wahab, 2002: 41; 벌로 & 벌로, 1992: 390)과 성매매 문제를 여성들 자신들의 손으로 해결하려 시도했다는 점(벌로 & 벌로, 1992: 387)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활동의 결과, 1903년과 1949년 사이에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들이 연속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 또한 의미 있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Jeffreys, 1997: 7-34).⁹⁾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당시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던 ‘사회정화,’ ‘사회개혁’ 운동에 흡수되면서 그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국가와 경찰에 의한 여성몸의 통제권을 역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성매매종사자들에게 더

9) 그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1949년 제정된 UN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다.

욱더 적대적인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Lerum 1999: 12-3).¹⁰⁾ 성매매에 관한 이상의 두 가지 입장은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페미니스트 운동진영의 전략과 국가정책,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논쟁의 거점이 되어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다시 시작된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쟁은 수렴될 수 없는 입장의 차이들을 반복하면서 갈등을 노정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론의 발전을 추동하기도 하였다. 70년대부터 페미니스트들은 각자가 개념화하는 노동과 성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달리 이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페미니즘의 분류 방식에 따른 설명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은 노동과 계약 관계에 대한 다른 관념과 인식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섹슈얼리티에 관해 다른 관점에서 성매매를 이론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재거, 1996; Zatz, 1997; O’connell, 2002). 예를 들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유계약에 대한 전통적 믿음에 근거하여 성매매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한다. 자유계약이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비범죄화를 추구한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노동의 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특별히 주목할 만 것은 없다고 보고, 임노동의 억압적, 착취적 요소를 강조하는 하나의 예로 사용한다. 한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라고 주장하고 가부장제 억압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남성이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으로 사용하거나 여성을 성의 노예로 강제하는 성역할을 강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 근절에 동의한다(재거, 1996; Zatz, 1997).

그러한 구분방식은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는데, 이는 논쟁을 단순하게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위의 분류방식은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 성매매관련 페미니스

10) 성매매가 어떻게 질병과 관계되며 과학의 탐구 영역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번 벨로 & 보니 벨로(1992), Lerum(1999)과 Wahab(2002)를 참조할 것.

트 담론을 생산하고 논쟁을 이끌어 온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을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기여를 지나치게 축소시킨다. 둘째, 80년대 이후 지구화의 문제와 얽힌 초국적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됨으로 인해 복잡해진 이론적 지형도를 읽어내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셋째, 위의 세 가지 분절적 관점 중의 하나로 성매매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특히 80년대 이후 성노동을 주창하면서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집단의 등장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차이들 간에 접합과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위의 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넷째, 무엇보다 그러한 방식의 ‘분류화’는 백인, 이성애 중심의 일부 페미니즘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페미니스트들 간의 위계적 경계를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80년대 이후 섹슈얼리티의 이론화와 성매매 관련 논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친-성노동(pro-sex work)과 반-성노동(anti-sex work)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들 간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자발/강제, 비범죄화/규제/금지 논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반-성노동 (Anti-Sex Work)

20세기 초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하던 성매매 관련 페미니스트들의 논쟁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재가열되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으로 우선, 섹슈얼리티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차이가 80년대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논쟁으로 촉발된 ‘섹스전쟁(sex war)’¹¹⁾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러한 가시적 분열은 ‘친섹스(pro-sex)’와 ‘반섹스(anti-sex)’간의 대립을 결과하였는

11) 사실 ‘전쟁’이라는 단어는 페미니스트들 간의 다양한 차이를 ‘동등’하지만 ‘배타’적인 두 가지 측면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그들 간의 접침과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단어를 수용한 것은 일반적인 ‘명명의 정치학’을 따른 것으로, 본 저자의 인식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당시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구체적인 논쟁은 저자의 줄고(1999)를 참조할 것.

데(Wahab, 2002: 51; Lerum 1999: 17), 이후 친성노동과와 반성노동과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90년대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성매매 운동진영인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하 CATW)과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하 GAATW) 간의 강제/자발 논쟁이 이어졌고, 이들은 다시 국가에 의한 통제 방식의 선호의 차이에 따라 규제주의, 근절주의, 비범죄주의로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소위 급진주의라 불리는 ‘반섹스’ 페미니스트들은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다. 그들은 “페미니즘에 있어 섹슈얼리티는 맑스주의자에게 노동의 관계와 같다”는 유명한 명제 하에(MacKinnon, 1989: 3) “섹스는 모든 여성들을 지배하는 권력”이라 전제한다(Barry, 1995: 10-11). 그들에게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폭력과 지배”와 분리될 수 없으며(Dworkin, 1987; MacKinnon, 1989), 성적 착취는 남성지배의 “정치적 조건”이자, “여성 억압의 토대(foundation)”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성되고 승인되는 전제”(base)이다(Barry, 1995: 11). 특히 성매매는 그러한 성적 착취의 토대로서 남성보다 낮은 여성들의 “계급적 조건”을 증명하는 기제가 된다(Barry 1995: 9-24). 문제는 성매매가 남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착취 혹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남성들의 잠재적인 소유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결코 성평등의 지향과 양립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성중심 사회에서 성매매는 강간 처럼 본질적으로 강제적이며 억압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Barry, 1995; Jeffreys, 1997). 여성의 선택과 동의는 남성지배라는 조건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관해 여성들의 동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중요한 점은 강제건 자발이든, 동의를 했건 안했건 성매매가 항상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점이다(Barry, 1995: 23).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이론화는 이후 근절주의에 기반한 반성매매(anti-prostitution), 반인신매매(anti-trafficking) 진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면서 성매매문제를 정치화하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성매매 관련 페미니스트들의 이론화와 여성단체의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서구 남성의 동남아시아 등

지로의 섹스관광, 아동과 여성에 대한 국제적 인신매매의 문제들이 국경을 넘은 에이즈의 확산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Kapur, 2003; Bertone, 2000; Kempadoo, 1998a). 지역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한계를 넘어 국경을 넘고자하는 여성들과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경계의 흔들림에 대한 시대적 불안감과 잘 결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성매매, 반인신매매 여성운동의 진영은 사실상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즉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Doezema, 1999: 37).

CATW는¹²⁾ 가장 강력한 ‘신근절주의(neo-abolitionist)’ 반성매매진영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운동 단체로 베리(Barry)가 주도하여 1989년에 만들어졌다. 여기에 속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한 집단의 인간을 다른 집단의 이익과 사용을 위해 성(sex)의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성차별의 극단적 형태이기 때문에 이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단지 성(sex)으로만 정의되며, 언제나 매매되고, 성적 착취에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집단으로서의 여성 전체”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CATW, 1997). 그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추진하지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화를 지향하면서 성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의 입안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극단적으로 억압받거나 착취당하는 조건에 놓여있는 현실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과 ‘성노동’이라는 개념 및 용어에 분명히 반대한다.¹³⁾ CATW의 입장을 대표

12) CATW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는 현재 필리핀에 있으며 몇 개의 여성단체들(Women's Crisis Center, Kalayaan, BUKAL, WEDPRO, BUKLOD, Olongapo City, Nagkakaiang Kababihan ng Angeles City, Democratic Socialist Women of the Philippines, Kakampipi)로 이루어진 연합체이다. 이중 부클로드(BUKLOD)와 나카가(Nagkaka)는 성매매 ‘생존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쉼터 개념의 자활단체로 타여성단체는 이들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베리는 ‘성적착취에반대하는협약(Conven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이라는 국제조약을 제안하고, 1995년 베이징 여성 대회에서 이 협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성매매 문제를 국제인신매매의 문제와 연결하여 국제적 반향을 일으키는데 공헌하였다(Sullivan, 2003: 70-71).

한편, 강제와 자발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 중 하나가 1994년 설립된 GAATW이다.¹⁴⁾ GAATW는 국제적인 협약과 법적 규제가 모든 인간에 대한 인신매매를 불법화하는데 동의하지만 ‘강제적인’ 성매매와 ‘자유로운’ 성매매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Jeffreys, 1997). 이들은 국제법이 “성매매에 관한 성인의 자발적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하여 반인신매매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oezema, 1999: 37). 즉 인신매매와 강제화된 성매매는 명백히 인권에 대한 침해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성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성매매의 비법

13) 그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성노동’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첫째, 성노동의 입장은 왜 그러한 ‘노동’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여성과 아동의 몸을 사용하여 성(sex)을 사는 남성의 권리를 공식화한다. 그러한 태도는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구성하는 규범적인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한 관점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성의 제공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정의를 강화할 뿐이며 결국 성별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여성과 소녀들은 성산업의 이익의 증가를 위한 재료로서 끊임없이 유인되고 매매되고 있는데 성노동에 대한 주장은 자본가와 기업가의 성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합법화한다. 넷째, 이러한 관점은 일부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예를 들어 네팔지역에서만 일년에 7,000여명의 소녀들이 인신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한다. 그들은 ‘성노동’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성노예(sexual slavery)’ 상태에 묶여있을 뿐이다. 다섯째, 성노동이라는 개념은 친밀감에 관한 인간의 경험을 단순한 상업적 거래로 평가절하 한다(CATW, 1997).

14) Founda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STV)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며(STV, 1996), 1995년의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Platform 또한 사실상 강제/자발의 구분법을 취하고 있다.

죄화를 추구하며, 국제법상의 노동표준이라는 틀 하에서 성매매를 인식할 것을 주창하므로 친성노동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기도 한다.¹⁵⁾

2. 친-성노동 (Pro-Sex Work)

1980년대 초반, 드워킨과 맥키넨, 베리 등에 의해 대표되는 입장에 반발하면서 소위 친-섹스(pro-sex) 페미니스트 진영이 형성되었다(Lerum, 1999: 17). 이 같은 입장에 서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중시하면서 섹슈얼리티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창한다. 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역사적으로 여성과 성적 소수자 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해 온 방식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성을 규제해 온 법이 성별에 기초한 이중기준에 부합해 온 점을 강조한다(Rubin, 1984; 1995; Vance, 1984). 그와 같은 ‘성급진주의자’들의 입장은 당시 포르노를 둘러싼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후 성매매를 구성하는 담론으로도 수용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성노동자 권리 운동’은 베리로 대표되는 반성노동의 입장을 심각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Sullivan, 2003: 70).¹⁶⁾ 이들 진영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것과 자유롭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한다(Bell, 1994). 이들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부정

15) 실제로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GAATW는 CATW가 지지하는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협약’에 반대하면서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창하는 단체와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기도 하였다(Sullivan, 2003: 73).

16) 대표적인 성노동자 권리 운동 단체로 Network of Sex Work Projects(NSWP)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만든 단체이다. 그들은 노동에 관한 국제기준과 인권에 기반하여 실제 그들이 위치해 있는 노동조건에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Sullivan, 2003: 72). 그 외의 성노동자의 권리를 주창하는 단체로 International Congress of Whores(1985),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 Rights (1985), the World Whores Summit Charter for Prostitutes’ Rights (1985), Call of Tired Old Ethics 등이 있는데 이들의 관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적 정체성과 가치들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성적 주체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 페미니스트들을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친-성노동’ 페미니스트라 부른다. 이들 중 일부는 고객과 경찰 등의 다양한 폭력으로부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법화(legalization)를 지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주류’ 페미니즘에서 배제되어 온 성매매여성들이 담론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가부장제의 구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매매 안에 내재된 폭력과 위험성을 배제하고 성인 여성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만 강조함으로써 자발/강제의 이분법을 되풀이 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낙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실제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한 여성의 성통제라는 규제주의 논리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논리가 재생산하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대해 함구한다.

따라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페미니스트들 진영의 관점은 다시 이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여성의 자발적 선택, 혹은 성적 결정권의 문제로 보는 기존의 강제/자발의 이분법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를 이론화할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기인한다(Lerum, 1999; Sullivan, 2003; Doezema, 1998; Kampadoo, 1998; Thorbeck & Pattanaik, 2002). 이러한 입장에 선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성매매를 강제적인 것이라고 보는 근절주의자들의 입장이 기존의 남성중심의 논리인 ‘문제적,’ ‘개별적 여성’의 문제에서 ‘성차별적’ ‘사회 문제’라는 관점으로 쟁점을 옮겨간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하지만, 여성이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행위성’을 부인한다는 점을 비판한다(Lerum, 1999: 31). 성매매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고 여성을 가부장제의 불쌍하고 나약한 희생자라고 고정시킴으로 인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제들을 재확인하고 재강화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주도해온 지배적인 페미니스트 담론의 아이러니는 성매매에 관한 국가의 규제(regulation)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

한 남성 권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면서도 국가 의존적인 법적 해결 방식이라는 도구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남성, 국가, 정책의 권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한다고 본다.

한편, 강제/자발을 구분하는 담론은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만을 보호하고 강제적 성매매만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자발적 성노동자들에게는 죄책감을 부여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비판한다(Pickup, 1998: 45). 강제와 자발을 구분하는 것은 더러운 ‘창녀’와 순수한 ‘마돈나’라는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이분화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Doezema, 1998: 46-47). 더군다나 성별과 계급, 인종차별 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문화적 구조를 설명하지 않는 ‘성매매여성 권리주장 담론’은 어떠한 실질적인 사회변화도 추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적이다(Bell, 1995: 111).

이 같은 주장은 기존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규제주의자들’의 논리와 ‘근절주의자들’의 논리 모두를 비판하는 것으로 성매매 관련 운동과 이론화에 발전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첫째, 그들은 성매매의 개념을 노동(work)의 일부로 포섭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단순한 직업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에는 비판적이다. 즉, 인식론의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성노동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지만 이는 성차별적이며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합법화가 가져올 성산업의 확산과 ‘성노동’이라는 용어의 과잉일반화를 경계한다(Thorbeck & Patteanik, 2002: 8). 이러한 진영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켐파두(Kempadoo, 1998a)는 성매매가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심리적 특징을 부여하는 “정체성(identity)”이자 (예를 들어 ‘창녀’라는 것은 한 사람의 다양한 성격을 하나로 일반화 혹은 본질화하는 정체성의 개념이다.) 임금을 발생시키는 “활동(activity)”이나 “노동(labor)”의 형태라고 인식한다(3). 그에게 성노동자라는 개념은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적절한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 등이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러므로 켐파두는 성매매가 하나의 지역에 국한되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성적인 주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간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담론에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성매매현장의 구체성과 맥락성을 보게 한다.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성매매 상황과 동유럽, 서유럽, 미국 등의 성매매 현장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여성들의 유입원인, 노동조건, 건강상태, 욕구, 그리고 이를 조건화하는 다양한 요인 등을 제시하면서(Doezema, 1998; 2000; 2002; Kapur, 2003; Kempadoo, 1998a; 1998b; Lerum, 1999; Thorbek & Pattanaik, 2002), 특정한 한 지역적 맥락조차 단일하지 않으며 모순과 차이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Zatz, 1997: 280). 특정 국가와 지역의 특수한 가부장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의 여건, 식민지의 역사, 섹슈얼리티에 관한 관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성매매를 구성하고 조건화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노동의 성별분업,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 이주노동의 문제 등의 틀로 논의를 확대한다(Cabezas, 1998: 85; Sullivan, 2003; Thorbek & Pattanaik, 2002). 국민국가 중심이 아닌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전략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지한다.

셋째,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제3세계 성매매여성’에 관한 식민주의적 관점을 비판하게 한다. 레럼(Lerum, 1999)은 대부분의 성매매와 관련된 서구의 연구들이 성매매여성들을 “탈인간화(dehumanizing)”해 왔으며, 이는 현재 “서구의 제도화된 지식생산을 위해 필수적 요소”였다고 주장한다(9). 특히 서구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의 억압과 착취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3세계의 성매매여성들을 “무지하고” “전통에 얽매어 있는” 극단적 가부장제의 불쌍한 “희생자”자로 획일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들을 문명화된, 그리하여 합당한 “구제자”로 위치시켜 왔다(Kempadoo, 1998a: 11). 소위 제3세계 여성들을 “상처입은 타자”로 규정하는 방식은 이에 개입하려는 서구 백인 페미니스트들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Doezema, 1998; 2000). 결국 제1세계/제3세계, 혹은 서구/아시아의 이분법에 기대어 국가간 경계를 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동을 단순히 ‘서구’라는 상징적 위치로의 편입이라고 단정하고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타자’로 구성하고자 한

다는 것이다(Kapur, 2003: 6). 그러므로 제3세계 여성들이 근거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착취당하는 불쌍한 가부장의 희생자’라는 지배적 재현양식 이외의 다양한 모습들이 실제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

III. 한국의 여성주의 성매매 논의

1. 논리적 근거 및 의의

현재 우리나라 여성주의 성매매관련 담론은 반성매매, 반인신매매라는 기본 인식의 합의하에 근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몇 개 단체의 연합체격인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이하 한소리회)가 역사 면에서나 활동 면에서 한국 성매매여성인권운동의 핵심 축을 이루며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¹⁷⁾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2000년 이후 성매매인권운동을 활발하게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서울시의 지원으로 생긴 <늘푸른 여성정보센터>(2000년), <다시함께센터>(2003년), 2001년 여성부의 탄생과 2003년 국무총리산하에 생긴 <성매매방지종합대책기구>등으로 인해 유도된 민·관·학 공조체계의 성립은 그동

17) <한소리회>는 1985년 용산에서 개소한 막달레나의 집과 1986년 의정부에서 문을 연 두레방이 중심이 되어 1986년 10월에 설립되었다. <한소리회>의 의미는 성매매 여성들의 한(恨)의 목소리 혹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막달레나의 집, 2000: 75). 2004년 겨울, 현재 <한소리회>는 4개의 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 속초성폭력상담소, 쓰냐의 집), 7개의 지원센터(다비타의 집, 두레방, 햇살센터,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교회, 오 테레사 수녀님,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7개의 쉼터 및 보호 시설(로템의 집, 막달레나의 집, 벚들의 집,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은성원, 정다운 집, 한국여성의 집) 등 18개의 민간단체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다시함께센터>를 <한소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한소리회 리플릿, 2004).

안 힘겹게 ‘현장’을 지켜 온 여성주의 활동가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역사 뒤에는 오랫동안 성매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애써온 <한국여성교회연합>(이하 교회연)의 노력이 있었으며,¹⁸⁾ 비가시적으로 존재해왔던 ‘현장여성들’의 자치조직들이 있었다.¹⁹⁾

우리나라 여성주의 성매매 운동의 이론적 토대는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착취적인 성산업 구조 드러내기”로 나아갔다(원미혜, 2004: 42). 또한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성도덕에 의해 초래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과 시선을 견어내고, 자발과 강제를 넘어서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행위”임을 강조해 왔다(원미혜, 1999; 한소리회, 2002; 김현선, 2003; 정미례, 2003). 그리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피해자”이자 “성적 권력의 피해자”이며, 직접적으로는 “성산업의 피해자”로 규정짓게 하는데 기여하였다(원미혜, 2004: 36-44). 특히, 현장활동에 기반하여 나온 보고서들은 착취와 억압, 인신매매의 장으로서의 성매매 현장을 ‘고발’하여 여성들의 피해상황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²⁰⁾

18) <교회연>의 활동에 대해서는 민경자(1999)와 교회연(1983; 1988) 등 그동안 나온 토론회 자료집들과 이현숙(199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부분적으로나마 ‘역사화’된 자치조직 중에는 ‘민들레회’가 있는데 <교회연>에 의하면 “민들레회는 기지촌 여성들의 일종의 자치조직으로, 처음에는 자체 경조사를 돕기 위한 조직으로 시작”했으나, 정부측에서 인수하여 “새마을 조직처럼 모든 기지촌마다 ‘민들레회’를 조직했다”고 한다(교회연, 1987: 17). 또한 기억되어야 할 주요한 조직으로 송탄 ‘여성의 모임’ (캐더린 문, 2001: 206)이 있는데, 이를 이끌던 김연자씨는 1964년부터 89년까지 25년간을 기지촌 성매매여성으로 살아온 ‘현장’ 출신의 여성운동가이자 최초의 기지촌 여성운동가로 기지촌에 대한 최초의 증언자이다. 그는 이후 70년대 후반 ‘백합선교회’를 만들고 이후 신학공부 후 전도사가 되어 ‘참사랑 선교원’이라는 기지촌 여성들의 쉼터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2년 8월, 학생운동가와 <두레방> 자원 활동가 출신들과 결합하여 <참사랑 쉼터>를 개원했다고 한다(정희진, 1999: 309-312). 그 외에도 엄상미(2002)는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서울 용산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자치조직인 ‘개나리회’에 대한 기록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의 성과물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한국 성매매역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야마시다 영애, 1992; 강선미·야마시다 영애, 1993), 성산업의 실태 및 성매매여성들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매매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으며(교회연, 1983; 1987; 1988; 1996a; 한국여성개발원, 1998; 김현선, 2000; 2001; 2002a; 2002b; 두레방, 2003; 백제희, 2000; 새움터, 2001b; 원미혜, 1996; 여성부, 2003), 관련법안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법적 대응방식 및 탈성매매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왔다(남상희, 2002; 남윤인숙, 2002; 여성부, 2001a; 2001b; 양현아, 2004; 김엘림, 2004; 교회연, 1996b; 한국여성개발원, 1989; 2001; 여연, 2001; 2002b; 한국여성민우회, 1996; 국회여성위원회, 2004; 한국여성학회, 2004; 한국여성개발원, 2002; 한국여성학회, 2003; 2004). 여기에 가부장제 성문화의 문제점과 젠더화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성매매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이영자, 1989; 1997; 2004; 장필화·조형, 1991; 장필화, 2003; 원미혜, 1996; 1999), 성매매관련 운동에 관한 평가와 기록을 통해 성매매 논의와 활동이 주류 학계가 아닌 여성주의 운동에서 출발하고 주도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데 기여해 왔다(두레방, 2001; 막달레나, 2000; 이미경, 1987; 신혜수, 1998; 정미례, 2003; 민경자, 1999; 정희진, 1999; 김현선, 2004).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안의 성매매 근절운동의 추동력이 되면서 강력한 법제정이라는 결실을 이루고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수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필요성을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인간의 성적 욕구가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남성의 성적욕구만을 자연화하고, 성본능이라는 이름 하에 성불평등이 재생산해 왔다고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이영자, 2004: 2). 그리하여 성매매의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가시화하면서 성매매에 관한 용어를 변화시키고, 여성

20) 특히 <새움터>, <두레방>, <교회연> 등지에서 나온 자료집들은 이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정의하는데 기여해 왔다.²¹⁾ 그것은 “여성억압을 위한 권력에 의해 구성된 담론”을 해체하면서(이성숙, 2002: 8), 그동안 들리지 않고 비가시화 되어 우리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 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주의 성매매 담론은 운동진영 내부의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수렴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거칠게 일반화해 보면, 첫째, ‘성매매는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범죄’이며 (남성에 의한 성) ‘폭력’이다. 둘째,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인신매매’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성매매된’ 여성은 그러한 인권유린과 폭력,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²²⁾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며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정의(손승영, 2004: 16)에 동의하고, 따라서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성매매가 이중적 성구조와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신체적 구속을 동반”한 “성적 착취” 구조이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힘들다는 견해(이영자, 2004: 10)에 이의 없이 합의한다.

이에 따라 서구와 달리 자발/강제, 성노동/반성노동 등의 논의는 존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아마도 일제시대에 실시된 ‘공창제’가 지니는 제

21)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의 변화에 대해서는 원미혜(2004)를 참조할 것.

22)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폭력성’을 사회에 인식시키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조진경, 2003: 31)로서의 성매매, ‘폭력’으로서의 성매매를 부각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질적으로 “인신매매”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김현선, 2002; 2003; 조진경(두레방자료집 중), 2003: 56; 조영숙(교회연자료집 중), 2003: 95), ‘범죄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여연, 2002: 69)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성매매여성들은 그러한 폭력과 범죄,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새움터; 다시함께 센터 팜플릿; 여성부 성매매홍보 리플릿 등 대다수의 여성단체)로 자리매김 되게 된다.

국주의에 의한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사용이라는 부정적 함의에 대한 반응 때문이기도 하며, 그동안의 여성주의가 한국적 가부장제의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성적 위협과 구조적 모순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성학계 내 이론적 논쟁의 부족으로 기인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최근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게 된 배경은 학계의 문제제기와 이론적 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매매현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성매매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은 불법적 성매매가 지닌 여성착취 구조에 대한 인식고양과 더불어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 현상을 ‘근절’시키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그러한 측면과 더불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한국 사회의 성산업과 성매매의 창궐현상, 이와 연관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다른 논의자체를 봉쇄하게 만들었다. 사실 여성주의자들은 단일 전선을 형성해서 견고한 가부장적 구조와 남성중심의 지배적 담론에 대응하기도 버거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주의 내부에서 주도적인 성매매 담론에 깔린 전제들이 지닌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진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다양한 이론적 토의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의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지배적 담론 밑에 숨겨진 다양한 실천의 역사가 침묵당하고, 이분법적 선택의 강요로 인해 내부적인 경계가 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²³⁾

23) 우리사회의 여성주의자들도 실제적으로는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다른’ 활동을 전개해오기도 하였다. 예들 들어, 한 현장단체는 성매매여성들을 ‘성판매자’라고 부르고,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콘돔을 나눠준다든지 하는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줄이는 활동도 중시하고 있다. 원미혜(2004)는 성매매를 “가부장제의 산물”이며 “여성들에게 ‘위험스러운’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성주의자들에게 성매매를 정의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그것이 지닌 성매매에 대한 구성적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를 통해 기존의 시각에 균열을 가하면서 성매매를 구성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하고자 하며, 셋째, 결국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험을 다르게 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이 놓여있는 구조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설명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Zatz, 1997: 280). 다시 말해 우리가 성매매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성을 파는 사람들을 호명하는 방식과 실천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매매여성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인과 오명을 덜어주고자 하며, 동시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보는 시각은 여성주의자들의 논지의 인식론적 기반이 되며, 성매매 관련 운동 및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본고는 향후 여성학계 내에서의 활발한 이론적 논쟁을 기대하기 때문에 운동의 내용을 평가하기 보다는 성매매를 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러한 논의는 하나의 관점을 공격하거나 그간의 성매매 현장의 수많은 노력들을 무화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다층화하고자 함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동시에 여성에게 “경제적 수단”이자 “성관계”이며 “삶의 한 유형”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50). 비슷한 맥락에서 한 활동가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를 “삶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성숙(2002)은 성매매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는 논의구조를 비판하고 성매매를 보는 여성주의자들의 관점이 성매매 여성의 권리중심으로 변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주변적 위치에 놓여 있음은 물론 “포주와 결탁”하거나 “공창제를 주장”한다고 의심받으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쟁점 및 한계

1) 일반화와 보편화의 문제

“성매매는 폭력과 착취이며, 범죄행위이다. 그러므로 여성은 피해자이다,” “성매매는 인신매매이다” 등의 선언은 성산업에 개입되어 있는 무수한 억압의 고리들과 실체들을 드러내고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들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특히 성매매라는 담론이 정치화되는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논리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여성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등치시키는 문제이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오랫동안 억압적 가부장제하에 있었던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피해자’라는 관점은 주요한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다’라는 주장은 조심스럽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는 자발/강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이 동질화, 획일화되면서 억압과 착취의 경험만이 부각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피해자 이외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장은 닫히게 된다.

그러한 방식의 일반화는 실제 성구매자와 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 알선자와 판매자간의 다양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고 다양한 맥락의 분석을 힘들게 한다. 또한 국가별, 지역간 맥락의 차이는 물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성산업의 차이에 따라 규정되는 정체성, 법적 위치, 성구매자의 요구, 규제정도, 고립과 통제의 정도가 다르며, 약물 복용의 상태, 당일의 컨디션과 나이 등의 차이에 따라서도 실제 여성들이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간과된다.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섬세하게 관찰될 수 있는 지점이 사장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죄책감이 부여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모든 성매매종사여성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일반화하는 문제다. 한국적 성매매 맥락에서 인신매매성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구의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를 인신매매와 등치시키면서 남성폭력이라는 전지구적 체계의 근거로 개념화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인식하지는 것이다(Sullivan, 2003: 74). 인신매매를 정의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형태든 강제성을 수반한다든지, 강제적 노동 혹은 노예상태를 함의해야 하는 반면,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에서 동의 혹은 강제가 수반되었는지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을 파는 행위에는 제한적인 선택의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보이는 동의가 수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의 근절과 인신매매의 근절을 동일시하게 되면 여성들의 다양한 이주원인과 과정, 노동의 형태 등이 인신매매과정과 등치되면서, 실제 과정과 내용의 차이, 그 과정에 개입되는 이데올로기적, 물적 요인의 다양성이 획일화된다. 그러한 총체적 일반화는 이주여성노동자에게 부여되어 왔던 사회적 낙인을 ‘해체’하기보다는 ‘재확인’할 위험이 있으며(특히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에게 부여되어 온 사회적 낙인),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의 저해요소로서의 “위험한 외지인,” 가난과 가부장제의 불쌍한 희생자로서의 “타자”라는 식민주적 관점을 재강화하는 문제점마저 노정하게 된다(Kapur, 2003: 8). 다시 말해, 이주여성들을 모두 성매매 혹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보편화한다면, 성매매 현장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그들의 정체성은 ‘창녀’로 고정되고 다양한 이주의 원인, 노동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말할 장은 사라지게 되므로 신중하고 복합적인 접근을 하지는 것이다.

셋째, 주체의 행위성이라는 지점과 충돌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2000년 이후 여성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 온 ‘성매매된 여성,’ ‘성매매피해 여성’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성적 대상화를 강조하면서 성적 객체로서의 피해자 여성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최근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는 ‘몸을 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더러운 존재’에서 여성을 구출했으나 여전히 행위성과 판단력이 결여된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로 여성을 구속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오코넬(O’connell, 2002)은 성을 파는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을 “타자”로 가정하고 자신을 “잠정적인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적극적 행위자라고 하였다. 백재희(2002)가 밝혔듯이, “손님들에게 여성이 상품이 되듯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손님들은 돈”이 되기도 한다(136). 그들에게 손님은 착취자일 수도 돈벌이의 대상일 수도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이자 폭력으로 부터의 구제자일 수도, 연애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억압과 착취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적 성관계 혹은 착취적 노동의 현장을 각자의 삶의 목적을 위해 다르게 해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행위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²⁴⁾ 그러한 행위와 목적이라는 것이 가부장의 권력을 궁극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상 속의 협상능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성이 ‘허위의식’의 결과라고 해도 그러한 방법이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성적 본질주의의 문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성규범의 단순한 일탈자가 아니라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의 대가를 치르는 속죄양”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부권사회의 본질적인 부도덕성”이 은폐되는 방식을 폭로하고(이영자, 1989: 86-7), 이중적 성규범과 남성에게 부과된 성적 특권이 정당화되는 ‘현재’의 법적 규제방식을 비판해 왔다(이재경, 1993). 이러한 인식은 특정 집단이 본질적인 성적 정체성만으로 규정되어 온 방식과 그러한 원인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를 해체하고자 했던 여성주의 정치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 대다수 성매매 피해여성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일차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성분능론으로 환원시키는 인식론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이영자, 2004: 5)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다’라는 주장과 ‘성매매에는 억압과 착취, 폭력과 감금이 있다’라는 주장은 주의 깊게 분리되어야

24) 실제로 기지촌의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미군과 결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새움터, 2001b; 두레방, 2003). 여성들의 다양한 행위성에 대한 해석은 막달레나의 집(2002a; 2002b)을 참조할 것.

한다. 성적 억압, 착취, 성폭력과 성매매를 등치시키게 되면 여성주의자들이 비판하는 대상과 유사한 인식론적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가 그동안 쌓아 온 성정치학의 근거를 스스로 무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구매행위를 “남성”에 의한 “성폭력”(이영자, 2004: 8)이라 규정하고 성판매자를 남성 폭력에 의한 피해 여성이라 일괄 상정하게 되면, 성매매가 다양한 권력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로 축소된다. 또한 남성성에 전제되어 있는 본질적인 ‘위험성’만이 강조됨으로서 “남성의 손과 성기”는 여전히 “성매매된 여성”의 몸에 남겨지게 된다(Jeffreys, 1997: 345).

결국 성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측과 마찬가지로 근절주의도 성(sex)은 특권화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에서는 억압의 산물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쾌락과 행위성만이 생산되는 곳으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억압이든 쾌락이든 한 곳으로 수렴되는 환원론적 본질론을 노정하며, 젠더(gender)관계의 권력문제를 성(sex)간의 문제로 회귀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젠더는 계급, 나이, 섹슈얼리티, 인종 혹은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구성된다. 젠더에 관한 지배적 이해는 늘 특정한 사회-문화 속에서 잠정적으로 고정될 뿐이다. 그러한 다양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별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시킨다면, 젠더는 고정불변의 탈역사적, 탈사회적 요소로 ‘화석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자발적 선택/성적 착취’라는 이분법은 동전의 양면이다. 성의 수동적 대상이든 능동적 주체가이든, 결국 성적 관계에 기반한 정체성만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식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게이와 레즈비언 관계에서의 성폭력과 성적 착취, 타 인종 간 성적 폭력의 문제, 남성의 성을 사는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해 사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흔들면서, 섹슈얼리티를 본질론으로 환원시키는 인식론에 재포섭된다.

3) 지배담론의 재생산

성매매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지배 담론이 차용해 온 이론적 근거를 비판하는 일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필요성을 위해 사용되는 ‘성매매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주장이 사회와 문화 간 차이, 규범적 성적 실천과 행위, 경제구조, 성적 실천과 정체성간의 차이 등, 어떤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성매매의 의미와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비판해 왔다(Zatz, 1997: 278).

그러나 원미혜(2004)의 지적대로, 그동안의 여성주의는 “비가시화된 성매매의 문제를 ‘들릴 수 있도록’ 만들고 성매매 반대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지배적 담론의 언어와 코드” 또한 차용하기도 했다(46). 예를 들어 ‘불쌍한 (피해자) 언니들’이라는 담론은 남성가부장의 감정적 코드인 ‘여성성’에 호소하면서 보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으로 재배치시키고 남성들의 ‘호응’과 ‘지지,’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한 언어적 전술은 성매매현실 자체에 애써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대중 ‘충격’요법으로서의 감정적 호소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주의가 저항하고자 했던 바로 그 가부장의 지배적 성별담론에 다시 ‘여성’을 간히게 하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남성고객들이 원하는 ‘순종적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Miller, 2004: 149), 피해자 여성들을 가부장의 ‘치유’대상으로 재배치시키기 때문이다. 성매매방지법안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여성들을 사회체계로 복귀”시키고자 한다는 주장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은 명시적이다(손승영, 2004: 15). 이때, 사회 안전을 해치는 자로 사회통합 및 복귀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성매매여성들을 ‘치유’하고자 할 때 사용했던 논지의 동어반복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성매매는 나쁜 것이다,” “인격과 유린된 행위이다,” “성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누구의 관점을 반복하는 가이다. 성매매를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금지의 변을

펴고, 성매매여성들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어 온 사람들은 바로 도덕주의자인 남성 가부장이었다. 그들은 늘 지금까지 이중적 성규범과 위선적인 도덕적 잣대로 성매매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조장해 오지 않았던가?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시각을 ‘성욕이 강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낭년,’ ‘갈보,’ ‘사회악,’ 혹은 ‘어둠의 딸들’에서, ‘불쌍한 피해자,’ ‘우리의 언니들’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들을 자매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남성들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라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들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여성주의자들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성별화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중심의 담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해 왔다. 성매매에 관한 담론도 그러한 전제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에 관한 본질론적 사고와 도덕주의적 편견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이미 심신이 피폐해진 수많은 실제 피해여성들을 그러한 상황에서 ‘탈’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관한 담론에 있어 여성주의자들이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한 사유의 틀과 신중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IV. ‘또 다른’ 담론의 가능성을 위해²⁵⁾

성매매에 관한 본질론적 사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장 심각한 착취로만 이해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 근거하여 성매매를 비난하는 관점, 둘째, 성노동을 낭만화하거나 혹은 무비판적

25) 필자가 ‘또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개념화가 다른 관점에 비해 낫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이다.

으로 찬양하는 관점, 셋째, 일반 노동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인간화(humanization)하려고 하는 관점 등이다(Weitzer, 2002: 3-7). 본고는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의미 있는 시도로 현장의 여성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사회가 그들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떼뗄하지 못한 일이라는 오명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낙인이 있는 상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매매는 단순히 여러 가지 ‘일’ 중 하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의 한 종류라든지, 일이 아니라든지 하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개념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성매매가 일(work)임과 동시에 성(sex)임을 보지 못했다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성(sex)임과 동시에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Zatz, 1997: 291). 그들이 성을 파는 행위를 노동이라 보지 않는 이유는 자발/강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성에 부여된 사회적 낙인의 심각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오명을 재확인해 주기도 한다. 성매매가 ‘부끄러운 일’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기준에 따라 불건전한/건전한, 건강하지 못한/건강한 노동으로 나누고, 성을 파는 여성들의 ‘행위’를 전자에 배치시키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을 ‘부끄러운’ 자의 정체성으로 규정지음으로서, 그들 스스로 그러한 무의식적 위치짓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만약 성매매가(주로 성을 사고 알선하는 자의 측면에서) 폭력이라면, 왜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했던 ‘일’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억압과 착취관계이므로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 또한 어떤 일은 극심한 억압과 착취관계에 있으며, 소외된 노동이기도 하고, 정체성과 인격에서 분리되어 있기도 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생산의 사회적, 계급적 관계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여성이라는 집단의 성별이 남성

이라는 집단의 성별계급에 의해 일방적으로 착취당한다는 이론의 동어반복일 뿐이며, 이는 섹슈얼리티와 성별, 자아와 정체성 등의 관계를 보지 못한 채 계급관계만 강조하는 이론만큼 문제적이다(O'connell, 2002: 92).

성매매는 섹스(sex)이자 노동(work)행위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이건 불법이건 특수한 노동현장에서 요구되는 임무(tasks)를 수행해야 하며, 임무에 대한 가정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성에 관한 문화적 각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의 권력관계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관계에서 놓여 있는 ‘또 다른’ 종류의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위치성을 동시에 분석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인정하든지, 성매매를 자유롭게 방치하자고 하는 ‘나이트클럽’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관계가 생산하는 착취와 억압,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가 주는 착취와 억압을 고려하면서 주체가 지닌 제한적인 선택지와 동시에 가능한 행위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과 성별관계, 성관계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식민주의, 민족주의,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국가간의 불평등의 문제 등-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므로, 피해자/행위자, 자발/강제, 성을 파는 자=여성/사는 자=남성 등의 단순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지역적, 국내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성별 노동분업의 연속선상에서 성매매를 보게 한다.

섹스(sex)이자 노동(work)이라는 개념은 성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성애화된 노동, 성별화된 노동의 현실 속에 위치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해하게 해준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성방송의 에로물에 등장하는 배우, 하드코어 포르노물의 모델, 인터넷 방송의 비디오자키, 나이트클럽에서 반나체로 춤을 추는 무희들, 전화방과 노래방의 도우미 등은 성산업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노동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육체적 노동이면서 감정노동이기도 하고 임노동의 형태를 띠기도 하면서 착취당하는 소외된 노동이기도 하다. 그들이 광범위한 범주의 성적 행위(acts)를 판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섹슈얼리티와 노동의 정체성의 연결고리(nexus)에 놓여 있는 특정한 종류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Miller, 2004: 147). 성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라는 개념의 연속적 스펙트럼 안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을 인식하게 되면, “기업형성매매, 기지촌, 노래방, 다방, 단란/유흥주점, 방석집, 숙박업소(여인숙, 여관, 모텔), 안마시술소, 유리방, 이용업, 전화방, 보도방, 판자집” (김현선의, 2003: 4-5) 등, 각 영역이 지닌 분절과 접합지점을 포함하여 성적 서비스의 정도, 착취의 정도, 유입과 이탈과정의 차이 등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성매매를 노동(work)이자 섹스(sex)라고 인정하는 개념은 근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이성애/동성애, 상업적/비상업적, 피해자/행위자 등의 경계들을 혼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Miller, 2004: 147), 가장 급진적인 여성주의 성정치학의 지형을 넓힐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성노동이라는 개념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문제적인 ‘타락한’ 사회의 병적인 존재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과, ‘문제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불쌍한 ‘피해자’로 보호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면서 고정된 이미지에 균열을 가하므로(Doezema, 1998: 38), “가부장제와 전통적 성별역할”을 급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Lerum, 1999; Doezema, 1998; Kampadoo, 1998a; 1998b; Chapkis, 2000; Sullivan, 2003). 푸코의 논지에 의하면, 성매매는 “재생산 없는 성이자 욕망없는 성, 정체성 없는 성이며 섹슈얼리티 없는 성”이므로 이데올로기들의 “동맹의 전개”와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의 전개” 양자에 모두 도전적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성(sex)-섹슈얼리티-욕망-정체성”이라는 가부장적 이성애의 단선적 구조에 대한 도전의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Zatz, 1997: 300-301). 그러한 사고는 여성주의자들이 오랫동안 공격해 온 ‘재생산의 담론,’ ‘공/사의 이분법’ 등의 구조를 또한 전복하고자 한다. 성매매를 범죄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지배 담론은 그러한 전복의 정치학을 고려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에 ‘위험’하다.

V. 결론: 억압과 착취의 이론을 넘어

현재 우리사회의 성매매는 문제적이다. 성매매가 문제인 것은 성별화, 성애화되어 있으며 계급화, 인종화(raced)되어 있는 권력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와 물질 토대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폭력과 감금, 착취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유입과정과 일하는 현장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은 탈성매매 이후에도 내상과 외상을 남기면서 그들의 몸과 정신에 깊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 내재한 억압과 착취, 감금과 폭력의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걷어내기 위해 싸워왔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 반대’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반대를 실천하는 방식은 각자의 관점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거나 수용한다고 해서 여성주의 안에서 분리와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여성주의자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지배적인 여성주의 담론에 내재한 몇 가지 이론적 토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의 운동 방향이 잘못되었다든지 특정한 입장이 본질적으로 문제적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운동의 성과를 뒤로 하고, 지금까지의 이론화와 운동의 방향을 차분하게 점검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가 생산되고 수용되면서 ‘성매매 반대’의 이론적 토대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망의 반영이다.

어떠한 이론도 완벽하게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없듯이, 현재의 정책방향을 또한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가 완전히 불법인 곳에서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은 제3자가 쥐게 된다. 더군다나 성매매를 확일적으로 ‘범죄시’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성이 제거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촉진되고, 그들이 지닌 죄책감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Zatz, 1997). 성을 파는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가 극도로 제한되면서 그들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다. 한편,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곳, 특히 공창제도와 같이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성판매자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기구에 완전히 위임된다. 무엇보다 공창제는 ‘일

사적인 일'로 머물렀다가 떠날 수 있는 장을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게 하면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고정적이고 영속적인 정체성을 부여한다. 비범죄화를 내세우면서 부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또한 한계점을 지닌다. 특정 범주의 성매매, 혹은 성매매 중 특정부분이 불법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을 파는 사람들 간에 계급적 경계를 가르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비범죄화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3자가 개입되어 있는 형태의 성매매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민의 국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 불법으로 이주한 외국인 등이 성매매를 했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제3자의 음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Chapkis, 2000: 183).

여성주의는 정책이 지니는 그러한 한계들을 인식하면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대책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성적교환의 관계에서 얼마나/어떻게 “통제권을 지닐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Chapkis, 2000: 181). ‘우리’가 일이라고 보든 보지 않던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그러한 ‘일’속에서 일상으로 부딪히는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장치들을 제공하는 실천은 그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증진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의 가능성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대신, 현실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듯이, 성매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여성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근절’이라는 ‘이상적’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중간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정한 문화 안에서 성매매에 부여된 의미는 실제로 성을 사는 사람과 이를 매개하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매매에 관여된 여성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담론과 인식이 긍정적인 자기정체성 구성의 자원이 될 때, 그리고 정부, 법 집행, 경찰이 억압과 위협의 근원이 아니라 ‘지원’의 원천이 될 때,²⁶⁾ 여성들

이 실제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상처의 흔적을 지니지 않은 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여성주의가 진정한 ‘탈’성매매를 원한다면, 한국의 성매매 체계에 대한 여태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공격과 변화의 노력과 더불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구적이고 종별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인식의 틀과 자신이 원하지 않는 노동의 현장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여성주의가 ‘대신해서 말해주는(speak for)’에서 ‘말걸기(speak to)’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다면, 앞으로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직접 사회적 조건과 싸우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적 착취와 억압이라는 담론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매매에 관한 이론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물론 문화전반에 겹겹이 얽혀 있는 성애화된 성별구조 및 노동구조, 성산업의 착취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변화를 위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를 사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제 섹슈얼리티와 여성성에 대한 유서 깊은 가부장적 전통과 인식에 저항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던 여성주의 성정치학의 바로 그 지점에서 성매매를 다시 바라볼 일이다.

-
- 26) 현행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노력은 이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제 3자(포주, 업주 주인, 매개인, 인신매매자 등)를 중심으로 한 비판과 처벌은 성매매 현장 속의 여성들의 실제 협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착취적인 성매매 체계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국회여성위원회(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연구」 (연구자: 손승영, 김현미, 김영옥).
- 김엘림(2004), “1980년대 이후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이론』, 10호, 여름, 11-33쪽, 서울: 여이연.
- 김현선(2000), “우리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소리회, 새움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개최, 「군산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 _____ (2001), “주한미군과 여성인권,” 2001년 제주도 인권학술회의 발표문.
- _____ (2002a),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한국여성단체연합주관, 「한국정부의 성매매 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2b), “미군 기지촌의 국가간 인신매매와 성매매의 실태,”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 _____ (2004), “성매매와 여성운동,” *Wome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여성과 민주화 운동), 김명혜 편역, 193-215쪽, 서울: 경인문화사.
- 남상희(2002), “성매매와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한국의 여성정책』, 339-360쪽, 서울: 지식마당.
- 남윤인순(2002), “여성정책 형성과정과 쟁점: 성폭력특별법 제정에서 2002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까지,” 정책워크샵 자료집, 29-46쪽.
- 두레방(2001), 『두레방이야기: 두레방 15년 기념 자료집』, 두레방.
- _____ (1988-2002), 소식지1호~15,18, 23, 24호.
- _____ (2003), 「경기북부 기지촌 지역 성매매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 경기도 제2청사 여성복지과 후원.
- 막달레나의 집(2000), 『막달레나, 막달레나?』, 서울: 개마고원.
- _____ (2002a),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서울: 삼인.
- _____ (2002b), 『용감한 여성들 필드워크하다』, 막달레나의 집.

- _____ (2003), 『탈성매매,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 자활사업기록과 프로그램 매뉴얼』, 막달레나의 집.
- 민경자(1999), “한국매춘여성운동사: ‘성 사고 팔기’의 정치사, 1970-98,” 한국여성성의 전화연합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239-299쪽, 서울: 한울.
- 박종성(1994), 『매춘의 정치사회학: 한국의 매춘』, 서울: 인간사랑.
- 백재희(2000), 「외국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2), “그래도 나는 괜찮은 여자다,” 막달레나의 집 엮음,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서울: 삼인.
- 별로, 번·보니 별로(1992), 『매춘의 역사』, 서석연·박종만 역, 서울: 까치글방.
- 새움터(2001a), “성매매방지 특별법에 대한 언니들의 주장,” 새움터·이주여성인권연대, 「아시아성산업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결성과 성매매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_____ (2001b),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2001년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 _____ (2003), 여성부 후원, 「우리들의 목소리로-성매매 피해여성 심포지엄」.
- 손승영(2004), “성매매여성의 현실과 탈성매매 방안,” 한국여성학회, 「특별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 신혜수(1998), “여성인권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편,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제6장, 160-182쪽.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야마시다 영애(1992),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여성학과 논문.
- 양현아(2004),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한국여성학회, 「특별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 엄상미(2002), “‘갈보’ 혹은 ‘성노동자’의 인권론,” “어떤 역사: 성매매 지역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 막달레나의 집 엮음,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서울: 삼인.
- 여성부(2001a),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연구」 (연구자: 장필화,

- 정현미, 원미혜, 백재희, 이효희).
- _____(2001b),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연구수행기관, 한국여성개발원).
- _____(2003),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학회, 설동훈, 김현미 외).
- _____(2004a), 「권익증진사업안내」.
- _____(2004b),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고관련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 원미혜(1996),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1999),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섹슈얼리티 강의』, 174-208쪽, 서울: 동녘.
- _____(2002),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막달레나의 집 엮음,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서울: 삼인.
- _____(2004), “여성주의 성정치: 성매매 ‘근절’ 운동을 넘어서,” 『여/성이론』, 10호, 여름, 34-55쪽, 서울: 여이연.
- 이나영(1999), 『포르노, 섹슈얼리티,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서원.
- 이명선(2003), “민·관·학 공조체제의 가능성과 현실적 문제들: 서울시 성매매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여성정책의 이념과 공조 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엄」.
- 이미경(1987), “매춘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 이성숙(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서울: 책세상.
- 이영자(1989), “성일탈과 여성,” 『한국여성학』, 제5집, 한국여성학회.
- _____(1997), “성의 상품화,” 『한국여성학회 워크샾』 자료집.
- _____(2004), “왜곡된 한국의 성문화와 성매매 인식,” 한국여성학회, 「특별 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 이재경(1993),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 제9집, 8-30쪽, 한국여성학회.
- 이현숙(199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5년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정미례(2003),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

- 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편,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서울: 한올아카데미.
- 장필화(2003), “성매매와 여성,” 한국여성학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여성정책의 이념과 공조 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엄」.
- 장필화·조형(1991),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시간: A. 매매춘에 대하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논집」, 제7집.
- _____ (1990),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8집.
- 정희진(1999),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한국기치촌 여성운동사, 1986-98,”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300-358쪽, 서울: 한올.
- 조정아(2003), “성매매정책에 있어 민·관·학 공조체제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여성학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여성정책의 이념과 공조 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엄」.
- 조진경(2003), “‘성매매정책에 있어 민·관·학 공조체제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여성학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여성정책의 이념과 공조 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엄」.
- 재거, 엘리슨(1996), “매매춘에 대한 서구여성주의 시각들,” 「매매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2차 아시아여성학워크숍’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학센터 주최) 자료집.
- 문, 캐더린H.S.(2001), “한·미관계에 있어서 기치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일레인 김·최정무 편,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177-215쪽, 서울: 삼인.
-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83), 「기생관광: 전국 4개 지역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부산, 제주, 경주) (Kisaeng Tourism: A Nation-wide Survey Report on Conditions in Four Areas Seoul, Pusan, Cheju, and Kyongju)」.
- _____ (1987), 「매춘문제와 여성운동」.
- _____ (1988), 「여성과 관광문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_____ (1996a),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_____ (1996b), 「매매춘과 윤락행위방지법」.
- _____ (2003), 「성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성매매에 관한 시민의식조사보고와 토론회」 (후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 한국여성개발원(1989),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김엘림 책임연구.
- _____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_____ (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 _____ (2002),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구」.
-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_____ (2002a),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 토론회」 자료집 (여연, 새움터, 이주여성인권연대).
- _____ (2002b),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회(한소리회, 새움터,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2000), 「군산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 한국여성학회(2003),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 여성정책의 이념과 공조 네트워크 제3차 심포지엄」자료집.
- _____ (2004), 「특별심포지움: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 한소리회(2003), 「성매매 피해여성지원을 위한 전국연계망 구축 사업」,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여성부 후원.
- 그 외 단체 소개 팜플렛, 리플릿, 뉴스레터, 언니네(www.unniene.co.kr), 한소리회, 다시함께센터, 막달레나의 집 등의 홈페이지 웹사이트, 신문기사 다수 참조.
- Altman, Dennis(2001), *Global Se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rry, Kathleen(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rtone, Andrea M.(2000), “Sexual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he Politics of Sex.” *Gender Issues* 18(1), pp. 4-23.

- Bell, Shannon(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 Bindman, Jo(1998),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Slavery in the Sex Industry."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eds.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pp. 65-8, New York: Routledge.
- Brock, Nakasima R. and Susan B. Thistlethwaite(1996), *Casting Stones: Prostitution and Liberation in Asia and the United Stat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Cabezas, Amalia L.(1998), "Discourses of Prostitution: The Case of Cuba."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eds.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pp. 79-86, New York: Routledge.
- Chapkis, Wendy(2000), "Power and Control in the Commercial Sex Trade." In *Sex for Sale*, pp. 181-201, NY: Routledge,
- CATW(1997), "On the Issue of Prostitution as 'Sex Work' Statement of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Asia Pacific.
- Dank, Barry M. and Robert Refinetti, eds.(1999), *Sex Work & Sex Workers: Sexuality & Culture* vo.2.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Doezema, Jo(2002), "Who Gets to Choose?: Coercion, Consent, and the UN Trafficking Protocol." In *Gender, Trafficking, and Slavery*, ed. Rachel Masika, pp. 20-27, Oxford: Oxfam.
- _____ (2000), "Loose Women or Lost Women? The Re-emergence of the Myth of White Slavery in Contemporary Discourses of Trafficking in Women." *Gender Issues* 18(1), pp. 23-51.
- _____ (1998), "Forced to Choose: Beyond the Voluntary v. Forced Prostitution Dichotomy."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eds.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pp. 34-50, New York: Routledge.

- Jeffrey, Leslie A.(2002), *Sex and Borders: Gender, National Identity, and Prostitution Policy in Thailand*.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Jeffrey, Sheila(1997), *The Idea of Prostitution*. North Melbourne: Spinifex.
- Kapur, Rantna(2003), "The 'Other' Side of Globalization: The Legal Regulation of Cross-Border Movements." *Canadian Women's Studies: Migration, Labor and Exploitati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22 (3, 4), pp. 6-15, Toronto: York University Publication.
- Kempadoo, Kamala(1998a), "Introduction: Globalizing Sex Workers' Rights."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pp. 1-28,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8b), "The Migrant Tightrope: Experiences from the Caribbean."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eds.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pp. 124-138, New York: Routledge.
- Lerum, Kari(1999), "Twelve- step Feminism Makes Sex Workers Sick: How the State and the Recovery Movement Turn Radical Women into 'Useless Citizens.'" In *Sex Work & Sex Workers: Sexuality & Culture Volume 2*, eds. Dank Refinetti, pp. 7-36,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Meaker, Linda(2002), "A Social Response to Transnational Prostitution in Queensland, Australia." In *Transnational Prostitution: Changing Global Patterns*, eds. Susanne Thorbek and Bandana Pattanaik, pp. 59-68, London: Zed Books.
- Miller, Heather L. (2004), "Trick Identities: The Nexus of Work and Sex," *Journal of Women's History*, 15(4), pp. 145-152.
- O'Connell Davison, Julia(1998), *Prostitution, Power, and Freedom*.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_____ (2002), "The Rights and Wrongs of Prostitution,"

- Hypatia*, 17(2), pp. 84-99.
- Pickup, Francine(1998) "More Words but No Action?: Forced Migration and Trafficking of Women." *Gender and Development* 6(1), 44-51.
- Ruenkaew, Pataya(2002), "The Transnational Prostitution of Thai Women to German: A Variety of Transnational Labour Migration?" In *Transnational Prostitution: Changing Global Patterns*, eds. Susanne Thorbek and Bandana Pattanaik, pp. 69-85, London: Zed Books.
- Santos, Aida F.(2002),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in Wome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ast Asia-US Women's Network for Anti-Militarism.
- Saunders, Penelope and Gretchen Soderlund(2003), "Threat or Opportunity?: Sexuality, Gender and the Ebb and Flow of Trafficking as Discourse." *Canadian Women's Studies: Migration, Labor and Exploitati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22 (3 & 4), pp. 16-24, Toronto: York University Publication.
- Sullivan, Barbara(2003), "Trafficking in Women: Feminism and New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5:1 March 2003, pp. 67-91.
- Thorbek, Susanne and Bandana Pattanaik, eds.(2002), *Transnational Prostitution: Changing Global Patterns*. London: Zed Books.
- Vanaspong, Chitraporn(2002), "A Portrait of the Lady: the Portrayal of Thailand and Its Prostitutes in the International Media." In *Transnational Prostitution: Changing Global Patterns*, eds. Susanne Thorbek and Bandana Pattanaik, pp. 139-55, London: Zed Books.
- Wahab, Stéphanie (2002), "'For Their Own Good?': Sex Work, Social Control and Social Workers, a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4(4), pp. 39-57.
- Weitzer, Ronald, ed.(2000), *Sex for Sale*. New York: Routledge.
- Wijers, Marjan(1998), "Women, Labor, and Migration: The Position of Trafficked

Women and Strategies for Support.” In *Global Sex Workers: Right, Resistance, and Redefinition*, eds. Kamala Kempadoo and Jo Doezema, pp. 69-78, New York: Routledge.

〈Abstract〉

Prostitution: For Feminist Radical Sexual Politics

Lee, Na-Young

(Ph.D. Candidate, Women's Studies at University of Maryl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theorization on prostitution, while tackling the current hegemonic discourses on it. Prostitution around which women's bodies, sexuality, gender discrimination, class, and race are interlocked has been a contentious issue for feminists. Two competing views on prostitution- 'regulationist' and 'abolitionist'- had prevailed among Western feminists until the ideas about 'forced' and 'voluntary' prostitution, female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ex workers' rights arrived on the public scene in the 1980s.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views, including those of activists and scholars, on prostitution regarding human trafficking are split along ideological lines, depending on their perspectives on the body, sexuality, work, and feminist politics. The crucial difference of contemporary opinion is the relevant question of whether a person can *choose* prostitution as a profession or whether women are always *forced* to be prostitutes and whether prostitution can be considered work or not.

On the other hand, the perspectives of Korean feminists can merge into one perspective, 'abolitionism.' Korean feminist NGOs have some significant success in bringing prostitution into public consciousness, while challenging patriarchal conception of prostitution and shifting approaches from 'personal' to 'structural, systematical, and social' problems.

What I would problematize, however, is t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have not been permitted among feminists and feminist NGOs, other than the idea of ‘forced’ prostitution and the abolitionist view. I do not mean that there is anything inherently wrong with the NGO’s perspectives or demean their efforts to ‘help’ or ‘rescue’ ‘victimized’ ‘prostituted’ ‘poor’ women. There is nothing wrong with favoring one idea over others nor focusing on certain issues. The process may be necessary to make some tasks more manageable. It has also been helpful for the prostitutes to get public recognition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However, it is ‘problematic,’ when alternative perspectives are systematically blocked, ignored, or emotionally resisted by institutionalized knowledge and settled discourse. When there is an official frame or ‘master narrative’ enveloping it, varied ‘causes’ of the issue and other ‘voices’ are muted, isolated, separated, and/or simplified with no room for variation, overlap, or considerations of different social contexts. That tendency leads to the problems of universalism, essentialism, and reproduction of patriarchal ideas of sexuality and gender which feminist politics have struggled against.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bined idea of sex and work are required, because prostitutes’ experiences are related to other sexualized and gendered income-generating activities that women perform in the whole patriarchal capitalistic societies. I am convinced that this kind of thinking will permit a complex understanding of prostitution without losing the insight and accomplishment of feminist sexual politics.

Keywords: Prostitution, Sex Work, Feminist sexual politics, Forced vs. voluntary, Abolitionist, Regulationist, Decriminalization.